

전세집 채권자에게 移轉



10년전 1백50만원에 전세들어 살고있는 집이 81년11월25일자로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어 쫓겨 나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지난 82년 3월 8일 동생도 나와함께 100만원에 전세들어 살아와 형제가 모두 딱한 처지입니다.

집주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李복조 · 부산東萊구 明倫동533 40동2반>

<답>주택임대차 보호법 (81년3월5일) 3조1항에 의거, 임대차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의 새 소유자에 대해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주민등록이 지금 전세 들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盧武鉉법률사무소>